

학기제 현장실습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공업대학교 학칙 제22조 제3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38조에 규정된 현장실습 중 학기제현장실습(이하 “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의 구분 및 운영기준) ① 학기제는 졸업학기에 15주 과정과 8주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학기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15주 과정 : 1주간은 출석수업, 14주간은 산업체현장교육으로 운영한다.

2. 8주 과정 : 7주간은 출석수업, 8주간은 산업체현장교육으로 운영한다.

③ 학기제 교육생의 산업체현장 교육시간은 주5일 근무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정별로 다음의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5주 과정 : 500시간 이상

2. 8주 과정 : 300시간 이상

④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습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한 경우 대학과 학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01.>

제3조(참여자격) ① 졸업 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한 자

② 졸업학년 1학기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

1. 2년제 : 60학점 이상

2. 3년제 : 100학점 이상

③ 지도교수가 관련 분야 직무능력(대외수상)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을 받은 자

④ <삭제 2016.10.01.>

제4조(이수신청서 제출) ① 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 내에 현장실습 이수신청서<별지 1호 서식> 및 학기제 현장실습 산업체 일반현황<별지 2호 서식>을 지도교수, 계열(학과)장을 경유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제5조(학점인정) ① 학기제를 이수한 학생은 당해학기 신청 학점 전부를 교과목 별로 인정한다.

② 학기제 학점인정 신청은 학기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 계열(학과)의 계열(학과)장이 학기제 현장실습 학점인정원<별지 7호 서식>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계열(학과)에서 제출한 학점인정원을 취합, 확인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10.01.>

④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그 결과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한다.

⑤ 과목 담당교수는 종합평가하여 성적을 산출하며 학기제 현장실습종합평가서(별지 8호 서식)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한다.

제6조(실습기관) 학기제 실습기관은 계열(학과)별로 현장실습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실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총장과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에 대하여 협의 결정한 기관
2. 실습기관 지정요청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기관
3.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사업장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험장 또는 연구소와 국가보조를 받은 시험장 또는 연구소
5. 산학협동 규정에 의한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한 업체
6.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 설비, 후생복지 등이 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실습기관

제7조(실습기관 인정) 제6조 각호에 준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 후 계열(학과)장의 허가를 득하면 학기제 실습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실습기관 변경) 학기제에 참여중인 학생 또는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학기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기제 현장실습 실습기관 변경신청서<별지 3호 서식> 및 현장실습 이수신청서<별지 1호 서식>, 학기제 현장실습 산업체 일반현황<별지 2호 서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변경 승인된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제9조(중도포기 및 특별이수인정) ① 학기제에 참여중인 학생이 산업체의 약정내용 불이행 및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더 이상 현장실습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5주(15주 과정) 또는 2주(8주 과정)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학기제 현장실습 교육중도 포기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잔여기간은 학교학기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기제 기간의 1/2선 이상이 경과된 후 실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실습기관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기제 기간의 4/5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실습기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계열(학과)장의 현장실습 변경 및 유보 허가원을 받아 각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1. 대학의 공식행사,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2.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이수가 어려울 경우
4. 질병, 상해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경우
5. 기타 계열(학과)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참여로 잔여기간의 실습이 어려울 경우

제10조(실습 및 평가) ① 계열(학과)장은 실습업체와 실습기간, 실습부서, 실습내용 및 기타 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열(학과)장은 학기제 신청학생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실습업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③ 실습 학생은 실습일지에 실습상황을 매일 기록하여 현장지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학기제를 이수하는 학생은 학기제 종료 후 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별지 4호 서식> 및 실습일지를 계열(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계열(학과)장은 실습 학생이 제출한 실습일지와 결과보고서, 실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현장 관리자 교육생 평가서<별지 5호 서식> 및 지도교수의 학기제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별지 6호 서식>를 바탕으로 학기제 현장실습 학점인정원<별지 7호 서식>과 학기제 현장실습 종합 평가서<별지 8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실습지도) ① 학기제 참가 학생지도를 위하여 실습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도 교수는 학기에 3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실습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청취, 출근부 등을 점검하고 실습기관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실습지도 교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성적처리) ① 학기제는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② 각 과정별 참가학생의 성적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과정	성적반영 비율
15주 과정	·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30%(지도교수 평가) ·현장관리자 교육생평가서 30% ·과목별 학습수행평가(과제포함) 20% ·지도교수 순회지도보고서 20%
8주 과정	·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20%(지도교수 평가) ·현장관리자 교육생평가서 20% ·과목별 학습수행평가(과제포함) 20% ·지도교수 순회지도보고서 20% ·중간고사 20%

제13조(관계서류보관) 학생 현장실습 교육에 관계되는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01.>

제14조(기타준용)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학사내규, 대학 규정에 준하되 학칙, 학사내규, 대학 규정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09.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0.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09.01.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현장실습 이수신청서				지도교수	계열(학과)장
계열(학과)		학 년		이수신청학기	
학 번		성 명			
실 습 구 분	<input type="checkbox"/> 계절제 학기제 (<input type="checkbox"/> 15주, <input type="checkbox"/> 8주)	신청학점	학점		
실습 대상 기관					
실습기관명		실습부서명			
실습 담당자		부서연락처			
실 습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총 시간)				

【유의사항】

- ① 학기제를 이수한 학생은 당해학기 신청학점 전부를 교과목 별로 인정한다.
- ② 실습일지, 결과보고서는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불가합니다.

【서 약 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현장실습생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며, 현장실습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실습생은 현장실습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명예를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2. 실습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현장실습기관의 제 규정 및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활동 저해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대학에 연락하여야 한다.
- 다음의 해당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자
 2.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
 3.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대구공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개정 2016.10.01.>

학기제 현장실습 산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법인, 개인)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설 립 일		
소 재 지	본사			전 화 FAX)	-
	공장			전 화 FAX)	-
홈페이지 주소	http://			전자우편 (E-mail)		
실습생 관리 담당 부서	직위			전 화)	-
	성명					
업종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화공(), 재료(), 자동차(), 관광() 의료(), 생명과학(), 섬유(), 환경(), 토목건축(), 에너지(), 뷰티(), 기타()					
주요 생산품목 (2품목)	1)			2)		
인원 현황 (명)	임 원	기술직 (연구직포함)	사무직	기능직	기 타	계
공장위치 약도 및 기타 사항						

<별지 3호 서식> <개정 2016.10.01.><개정 2017.09.01.>

학기제 현장실습 실습기관 변경신청서

	담 당	과 장	센 터 장
결 재			

계열(학과)		학 번	
성 명		연락처	
종 전 실습기관	실습기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 경 실습기관	실습기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신청 사 유			
<p>위와 같은 사유로 실습기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현장실습생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150px;">학 과 장 :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대구공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p>			

<별지 4호 서식>

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계열(학과)		학 번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실습기관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실 습 내 용(자신이 담당한 업무 중심)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것(실습 전 및 실습 후 차이점 등)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 및 건의사항					
나의 미래 비전(현재 준비할 사항)					

20 년 월 일

학기제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5호 서식> <개정 2016.10.01.>

현장관리자 교육생 평가서

계열(학과)		학 번		성 명	
실습기관			실습기관 연락처	Tel) Fax)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평 가 항 목				만점	평가 점수
실습시의 태도 (실습에 대한 성실성)				3	
새로운 실습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3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습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정도				3	
용모, 복장 언행의 단정성				3	
협동심 (조직원 및 실습생의 원만한 인간관계)				3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성				3	
실습기간중의 근면성 (출·퇴근 상황 포함)				3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실습 중 혹은 각종 기자재의 관리철저와 실습장을 정리 정돈하는 태도				3	
작업 및 실습능력 (작업의 신속성, 정확성)				3	
계				30	

위와 같이 학기제현장실습 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실습기관 :

평가자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공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6호 서식> <개정 2016.10.01.>

학기제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

(15주 8주)

실습기관								
실습기관 주소								
계열(학과)명								
학번						학년		
성명								
순회지도일자	1차 :	년	월	일	2차 :	년	월	일
	3차 :	년	월	일	4차 :	년	월	일
실 습 평 가 항 목					만 점	평가점수	비 고	
실습사항의 숙지 정도					4			
실습적응 정도 및 창의력					4			
실습에 임하는 성실성, 근면성					4			
실습기기의 조작 정도					4			
협동 화합하는 자세					4			
계					20			

상기와 같이 학생 현장실습 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

(서명 또는 인)

대구공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10호 서식> <신설 2016.10.01.><개정 2017.09.01.>

학기제 실습기관 지정 신청서

섭외 교수	계열/학과		이 름	
	직 위		연락처	
실습 기관 정보	실습기관명		대표자명	
	업 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
	실무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사무실		직 위
휴대폰			종업원 수	
합의 내역	실습가능전공		현장실습 수용인원	
	실습내용	능력단위		
	실습일정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여부	지급 <input type="checkbox"/>	금액 (₩ 원)		
	미지급 <input type="checkbox"/>	※ 서식 18호 서식 : 현장실습지원비 미지급 동의서 제출		
위와 같이 실습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계열/학과명: 담당교수: (서명)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학 과 장: (서명) </div>				
대구공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11호 서식> <신설 2016.10.01.><개정 2017.09.01.>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실습기관용)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주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술 지도 위원	성 명		직위	
	부서명		휴대폰	
	전화번호		FAX	
	E-mail			
요청 사항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일수	()일
	실습전공		실습인원	명
	대상학년			
	자격요건			
실습내용				
실습요일				
실습시간	주 5일(월 ~ 금) 09:00 ~ 18:00 (8시간)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여부	지급 <input type="checkbox"/>	금액 (₩ 원)		
	미지급 <input type="checkbox"/>	※ 서식 18호 서식 : 현장실습지원비 미지급 동의서 제출		

본 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대구공업대학교 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기관명

신청인(대표)

(서명)

대구공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학기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 협약서는 회사명 대표(이하 “갑”)와 대구공업대학교(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소속 재학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 현장실습생 성명 (이하 “을”)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상호간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 습득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의 구분 및 기간)

- 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기간에 따라 계절제(방학기간 중 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최소 4주(160시간) 이상 실습하여야 한다.

제3조(“갑”의 현장실습 운영)

- ① “갑”은 실습생의 전문지식 함양과 경험습득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현장실습 기간에 맞는 이론 및 실습교육 내용을 수립한다.
- ② “갑”은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갑”은 현장실습을 지도할 담당자를 배치하여 실습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습생에 대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을”의 현장실습 운영)

- ① “을”은 현장실습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 후 실습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
- ② “을”은 “갑”의 실습생 선발에 필요한 정보 및 업무지원을 실시한다.
- ③ “을”은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1.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갑”의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생은 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실습생은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④ “을”은 현장실습 중 “갑”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갑”과 실습생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⑤ “을”은 “을”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종료 후 “갑”과 실습생의 제출 서류 검토 후 실습생에 대한 학점인정 절차를 실시한다.

제5조(실습기간 및 시간과 장소) 실습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 ① 실습 시간은 “갑”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1일 8시간 실습하는 것을 원칙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연장(최대 5시간/주)·야간·휴일 수련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실습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기관 및 실습생의 동의하에 연장·야간·휴일에 실시할 수 있다.
- ② 실습 장소는 “갑”의 사업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장소로 하고, 실습생의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등

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지정토록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6조 (현장실습지원비) 실습기관“갑”은 실습생“을”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하며 해당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해당 대학과 학생의(서면) 동의서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도교수 지정) “갑”과 “을”은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실습생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호) 실습기관은 실습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보험가입) 본교는 실습기간 동안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학 등 제3자가 실습생을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성희롱예방)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에서 실습생에 대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11조(복리후생 지원)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일반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없이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2조(수료증명서) “갑”은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참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경험 실습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다만, 고등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한 후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사업체명:

기관명: 대구공업대학교

주 소: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

대 표 자:

(서명)

대표자: 총 장 이 별 나 (인)